

문서번호 교보약사 리테일영업 32-2140- 0226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 펀드업무부서

2019. 12. 2.

제 목 소규모펀드 공시에 관한 업무협조 요청의 건

(박다숨 대리 T.767-9658)

1.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사 소규모펀드의 수시공시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소규모펀드 공시 기준일 : 2019년 12월 2일(월)

나. 근거 규정 및 공시대상 펀드 정의

- 근거 규정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
- 공시대상 펀드 정의 :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설정원본이 50억 미만인 공모 추가형 집합투자기구

다. 대상 투자신탁 : 교보약사공모주알파30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] 및 해당 자펀드

- 교보약사안정30증권자투자신탁1호[채권혼합]

첨 부 : (교보약사)소규모펀드 공시대상 목록 1부.



교 보 약 사 자 산 운 용 주 식 회 사
대 표 이 사 조 옥 래



수 신 처: 교보생명, 교보증권, 대신증권, 미래에셋대우, 미래에셋생명, 삼성생명, 신영증권, 신한금융투자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키움증권, 한국포스증권, 한화투자증권, DB금융투자, IBK투자증권, KB증권, KEB하나은행, NH투자증권, SK증권. 끝.